

# 담배회사의 진실을 들여다 보는 창: 담배회사 내부문건

*A Window Looking through the Truth of Tobacco Industry:  
Tobacco Industry Internal Documents*

이성규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1. 담배회사 내부문건의 공개

1954년 6월, 미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담배소송(tobacco litigation)이 시작된 후 수차례의 담배관련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모든 소송에서 담배와 질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sup>1) 2)</sup> 1964년 Surgeon General Report<sup>3)</sup>를 통해 흡연이 건강의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미국내 흡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더불어서 정부의 금연정책도 강화되면서 흡연율 역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소송의 판결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Brown and Williamson(B&W) 담배회사의 ‘공익제보자’를 통해 해당기업의 기밀문서(confidential documents)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연운동과 담배규제정책, 그리고 담배소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으로 이 문서를 접한 사람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의 Stanton A. Glantz교수였다. 그는 1970년 후반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공공장소 및 식당 등에 금연구역법(smoke-free laws)을 도입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금연운동가이자 학자였다. 그의 열정을 신뢰한 B&W의 공익제보자는 회사의 내부문건을

1) Mackenzie R, Collin J, Lee K. *The tobacco industry documents: an introductory handbook and resource guide for researcher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2003

2)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어도 1958년에(부터) 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3)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 Health Service. *Smoking and Health: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Washington: U.S. GPO, 1964.

4)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International Trade, Advertising and Promoting U.S. Cigarett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Washington D.C.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1

Glantz교수에게 발송했고<sup>5)</sup> 이후 Glantz교수는 동료학자들과 함께 1995년 7월 “Looking through a keyhole at the tobacco industry”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sup>6)</sup>에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담배회사의 부정직함(dishonest), 비도덕적인(immoral) 행동과 전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대규모의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일반에 공개된 계기는 1994년 Minnesota 주립정부와 비영리민간보험회사인 Minnesota Blue Cross and Blue Shield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때문이었다. 주립정부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이는 미국 내 또 다른 40개의 유사소송을 이끌어 냈고, 법원은 1998년 Minnesota Consent Judgment를 통해 Minnesota 담배소송에 연루된 담배회사들은 미국 Minnesota와 영국 Guildford에 문서보관소를 설치하고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의 원본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sup>7)</sup> 이후 담배회사와 미국 주립정부들 간의 문서공개와 관련한 합의안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6곳의 담배회사, American Tobacco Company,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BAT), B&W, Lorillard Tobacco Company, Philip Morris Incorporated(PM), RJ

Reynolds Tobacco Company(RJR)와 두 곳의 담배관련 연구소, Council for Tobacco Research와 Tobacco Institute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문서가 해당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최초 문서공개 마감일은 2010년 6월 30일로 법원이 명령을 하였으나 추가 문서 공개기간 연장 소송을 통해 현재는 2021년 9월 1일까지 마감일이 연장된 상태이다.<sup>8)</sup> 하지만 이 중 BAT와 Lorillard는 이 합의안에 불참을 선언해서 현재 이들 두 기업은 자신들의 내부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 2. 담배회사 내부문건 보관

MSA에 따라 현재 담배회사 혹은 담배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문서 보관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Philip Morris: <http://www.pmdocs.com>
- RJ Reynolds: <http://www.rjrtdocs.com/rjrtdocs/index.wmt?tab=home>
- Brown & Williamson: <http://www.bwdocs.com/rjrtdocs/index.wmt?tab=home>
- Tobacco Institute: <http://www.tobaccoinstitute.com>
- Council for Tobacco Research:

5) Glantz SA, Slade J, Bero L, Hanauer P, Barnes DE, The Cigarette Pap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6) Glantz SA, Barnes DE, Bero L, Hanauer P and Slade J. Looking through a keyhole at the tobacco industry: The Brown and Williamson documents, JAMA 1995;274:219~24

7) Mackenzie R, Collin J, Lee K. The tobacco industry documents: an introductory handbook and resource guide for researchers. London,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2003

8) United States of America vs. Philip Morris USA, Inc. ORDER # 1021, Document 5765.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 Sep 2006.

**그림 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 Center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의 입구정면 벽면**



Source: Photo taken by the author of the paper

Note: Stanton A. Glantz교수가 속해 있는 UCSF에는 Center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가 있고, 이 연구소는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Legacy Tobacco Document Library(LTDL)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미국 및 국제 담배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가진 약 2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담배규제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ng Center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정책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home](http://www ctr-usa.org/ctr/index.wmt?tab</a></p>
</div>
<div data-bbox=)

이들 기업들의 문서보관 웹사이트들은 협약 내용에 따라 기밀이었던 내부문서를 일반에 공

을 사용해왔다.<sup>10) 11)</sup>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약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개 마감일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금연관련단체와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서 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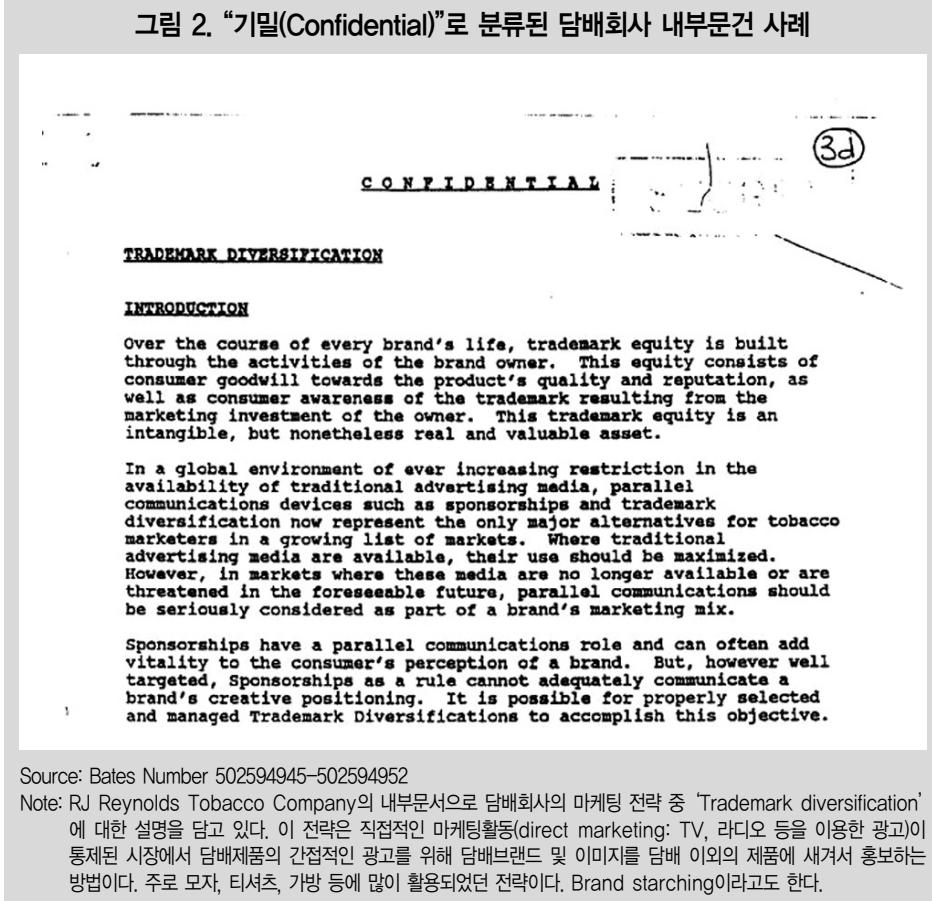
9) 담배제품개발에 사용되는 특허기술과 같이 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Mackenzie R, Collin J, Lee K. The tobacco industry documents: an introductory handbook and resource guide for researchers. London: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2003.

11) LeGresley EM. Understanding the Tobacco Industry: A "Vector Analysis" of the Tobacco Epidemic. Bulletin Medicus Mundi1999;72:17.

개하고 있지만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접속하여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여기에 기업 자체에서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혹은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봐 있다. 예를 들어, 문서발급신청 시 발급자체를 지연하거나, 문서 내 기밀사항<sup>9)</sup>이 포함됨을 강조하면서 공개를 거절하거나, 문서 내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파기하는 전략

그림 2. “기밀(Confidential)”로 분류된 담배회사 내부문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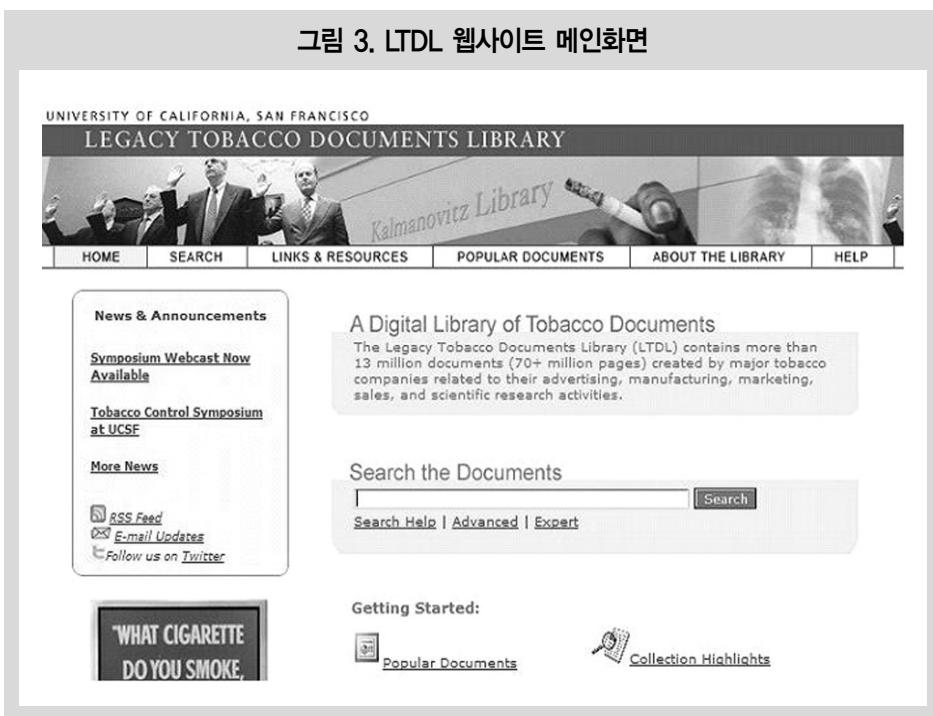


단체가 운영하는 자체 문서보관 웹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 ASH UK,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CDC Tobacco Industry Documents, GLOBALink(UICC),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Smoke Free Movies, Tobacco Control Archives(UCSF), Tobacco Document System(TDS-University of Sydeny), US House Committee on Commerce(The Bliley Collection) 등에서 특별 주제 혹은 부분적으로 담배회사로부터 공개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보

다 효율적인 문서활용을 위해서 UCSF의 운영, 관리 아래 Legacy Tobacco Documents Library (LTDL, <http://legacy.library.ucsf.edu/>)가 개설되었다.

2012년 1월 19일 현재, LTDL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총 13,763,649 건(79,591,719 페이지)이고 현재에도 새로운 문서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LTDL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1950~2002년까지 담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들이고 최근에는 2002년 이

그림 3. LTDL 웹사이트 메인화면



후의 문서들도 저장이 되고 있다. 한달 평균 전 세계 16,000명의 학자, 금연운동가, 변호사, 기자, 학생 등이 LTDL에 접속하여 227,000건의 담배회사의 문서를 열람하고 있다. 지난 2010년 LTDL에는 190개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하여 발표된 학술연구보고서는 2012년 1월 현재 약 600편에 달하고 그 외, 정부보고서, 기사, 책 등의 형태로 발간된 자료는 약 130편에 달한다.<sup>12)</sup>

### 3. 담배회사 내부문건의 중요성

국제사회는 흡연으로 기인되는 질환을 흔히 “담배유행병(Tobacco epidemic)”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담배 사용을 유행시키는 매개체(vector)를 “담배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 사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개체인 담배회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담배회사의 기밀문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문서를 통해 공개된 담배회사의 진실 속에는 그 동안 담배회사가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를 어떻게 속여 웠는지에 대한

12) Source from LTDL(Kim Klausner, Manager, Industry Documents Digital Libraries)

**표 1. 기업운영 담배회사 내부문건 보관 웹사이트와 LTDL 비교**

| 기업운영 문서보관 웹사이트                  | LTDL  |
|---------------------------------|---|
| - 기업마다 각기 다른 “찾기” 방법 적용         | - 문서 “찾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
| - 찾기방법에 대한 메뉴얼 취약               | - 지속적인 검색기능 향상  |
| - PDF 형태로 문서출력가능                | - PDF 형태로 문서출력가능  |
| - 일부 기업 사이트에서는 이미 열람한 문서 표시가 가능 | - 검색완료한 문서를 “Bookbag”에 일정기간 저장가능.                                     |
| - 사이트 운영을 맡고 있는 기업 문서만 검색 가능    | - Bookbag 문서목록을 개인 e-mail로 발송가능                                       |
| - 문서분류 취약                       | - 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내부문건을 공개하기로 한 모든 기업의 문서를 통합적으로 검색가능 |
| - 한정적인 문서공개                     | - 주제별, 날짜별, 기업별, 작성자별 등 세부분류 명확                                       |
|                                 | - 영구적인 문서공개   |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줬던 담배소송에서도 담배회사 내부문건의 공개 이후 담배회사의 부도덕함과 정보은폐에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책임을 담배회사에 명령하기도 했다.

담배회사 내부문건은 직원 간 교류했던 편지, 팩스, 메모, 기업 전략, 담배관련 실험 및 과학적 연구 결과물, 내부 보고서, 동영상 자료, 오디오 자료, 예산관련 문서, 담배관련 언론기사, 시장

조사결과 등과 같은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문건들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지금까지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담배규제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담배의 중독성,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오던 담배회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활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이들 문서를 활용했

**표 2.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세부주제**

|             |                 |               |
|-------------|-----------------|---------------|
| • 마케팅 전략    | • 정부정책 약화전략     | • 담배가격        |
| • 정치개입      | • 금연관련 비영리단체 감시 | • 담배밀수 및 보급전략 |
| • 시장개척전략    | • 과학자 정보교류      | • 담배산업의 경제성평가 |
| • 경쟁기업분석    | • 니코틴과 중독       | • 대중과 관계향상전략  |
| • 시장조사      | • 소비성향분석        | • 담배산업 지원연구   |
| • 해외사업 개척전략 | • 주요 회의 내용      | • 후원 프로그램 전략  |
| • 인사관련      | • 문서파괴          | • 주요 마케팅 대상   |

다. 언론사들은 담배회사의 불법적인 밀수활동 및 로비활동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활용했다. 금연운동단체들은 담배회사의 활동 뒷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해 내부문건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담배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mes)”의 뒷면에는 정치권과 일반 대중에 담배회사의 존재이유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 혹은 담배회사의 이미지 개선이란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밝혀냈다.<sup>13)</sup>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역시 담배회사 내부문건의 내용을 근거로 한 국제담배규제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수백건에 달하는 많은 학술연구와 언론기사, 책, 정부보고서 등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하여서 금연정책개발에 혁신적인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담배시장 및 담배회사의 활동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및 금연정책강화를 위한 노력은 끊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KT&G(Korea Tomorrow & Global)의 내부문건은 여전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LTDL을 통한 외국 담배회사 내부문건 연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시장점유율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PM Korea, BAT Korea,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 담배시장 개방 당시 시장진입을 시도했

던 RJR, B&W의 내부문건에서는 우리나라 담배시장조사, 소비자 성향조사, 전략적 마케팅 활동, 정부대상 로비활동 등과 관련된 수 많은 문건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가 취하는 전략들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LTDL의 문건들은 우리나라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2월 현재 우리나라 담배시장 및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 Lee S. Prediction of South Korea's Tobacco Industry and Market by Analyzing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Activities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Research for Nicotine and Tobacco 2012;3(1):1–9 (Korean)  
(<http://pdf.medrang.co.kr/Ksmt/Ksmt003-01-01.pdf>)

**요약:** 국내 담배회사들의 최근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담배시장 및 담배회사들의 활동변화를 예측한 보고서 (review)로써 LTDL의 내부문건을 보고서에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 Lee S. The Tobacco Industry in South Korea Since Market Liberalisation: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obacco Control(2011).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University of London(Ph.D.)  
**요약:**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우리

13) McDaniel PA, Smith EA, Malone RE. Philip Morris's Project Sunrise: weakening tobacco control by working with it. Tob Control. 2006;15:215~23.

나라 담배시장이 어떠한 이유에서 다국적 담배회사들에게 시장을 개방해주었는지, 그리고 이들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한 이후 수요창출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기 위해 LTDL 내부문건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 Lee K, Carpenter C, Challa C, Lee S, Connolly GN, Koh HK. The strategic targeting of females by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 South Korea following trade liberalisation. *Globalization and Health*, 2009; 5:2

(<http://www.globalizationandhealth.com/content/5/1/2/abstract>)

요약: 1988년 담배시장개방 후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수 있다. 하지만 58,000건(2012년 2월 현재)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결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합 가능한 또 다른 검색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담배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Korea marketing”으로 검색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색 중 중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wildcard” 기능을 통해 검색 중 단어의 철자가 잘못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검색결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검색어내에 \* 기호를 사용하면 wildcard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담배회사 내부문건들이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던 시절 작성된 것들이 많은 만큼 오타가 있을 경우도 있고, 혹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 간 표기 차이로 인해 검색결과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rivatization”은 미국표기이고 “privatisation”은 영국표기이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민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privati\*ation”으로 검색하면 된다.

LTDL에 보관된 모든 문서는 페이지마다 “Bates Number”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문서 분석결과의 참고문헌을 표기하게 된다. Bates Number는 유사한 번호내에 주로 공통된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핵심이 되는 문서를 찾았을 경우 해당 문서의 Bates Number 앞 뒤 번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다시 검색해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외에 담배회사가 사용한 약어, 핵심 간부의 이름 등도 문서를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LTDL에서 제공하는 해당정보의 목록을 사전에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담배회사 내부문건의 구체적인 검색 및 활용

## 4. LTDL 검색방법

LTDL은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문서검색방법, 저장방법, 활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무엇보다 검색어 (keyword searching terms)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관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Korea”, “South Korea”, “Seoul”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면 관련 내용들을 볼

방법은 “The Tobacco Industry Documents: An Introductory Handbook and Resource Guide for Researchers(<http://cgch.lshtm.ac.uk/tobacco/Han dbook%2008.07.03.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요약

2011년 9월 전세계 사망원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UN High-level Meeting이 열렸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선언문(declaration)이 발표됐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NCDs의 주요질환인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에 공통적으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흡연을 NCDs 문제해결을 위한 첫번째 우선순위(the first priority)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담배 확산의 매개체에 해당하는 담배회사의 활동을 철저히 연구하고 학습하여서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흡연 문제는 단순히 흡연자를 설득하여서 금연하게 하거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전략과 로비,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담

배규제정책의 시행을 방해하는 담배회사의 활동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담배회사의 전략과 활동, 그리고 그 전략과 활동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담배회사 내부문건은 매개체 분석에 필수품인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의 전략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1999년 이후 이미 6번의 담배관련 법정공방이 진행되었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담배회사 내부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담배회사를 넘어 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연구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는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 작성된 점, 둘째는 문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담배회사 내부문건들이 이끌어낸 담배규제 측면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 만큼 속히 많은 연구자, 언론인, 법조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는 이 일을 위해서 연구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일에 효과적인 지원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회사 내부문건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 해 본다. 보건  
복지